

국제운송약관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제 1 장 정 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용 어

1.1.1 회사

플라이강원 주식회사

1.1.2 여객

승무원을 제외하고, 운송인의 동의 하에 항공기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사람

1.1.3 운송

수송과 동의어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행하는 여객 또는 수하물의 항공 운송을 말한다.

1.1.4 운송인

항공 운송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 운송인과 동 항공권에 의거하여 여객 또는 그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당해 항공 운송에 관련되는 기타 서비스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것을 위임 받은 항공 운송인을 포함한다.

1.1.5 협약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조인된 "국제항공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바르샤바 협약"이라 칭함) 또는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협약 (이하 "개정 바르샤바 협약"이라 칭함) 또는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칭함) 으로서 그 중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1.1.6 협약에 정의된 것 이외의 국제 운송

바르샤바 협약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운송으로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출발지와 착륙지가 2개 이상의 국가에 위하는 운송을 말한다. 이 정의에서 "국가"란 한 나라의 주권, 종주권, 위임 통치, 신탁 통치 또는 권력 하에 있는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1.1.7 태리프 (Tariff)

회사가 여객 및 수하물 운송에 적용하는 운임, 요율 및 요금과 동 운송에 관련된 규정 및 절차. 이는 본 운송 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1.1.8 계약조건

항공권에 포함 또는 함께 전달되는 "계약조건" 이라고 별도로 명시되거나, 본 운송약관과 고지 문구에 명시된 조항

1.1.9 항공권

운송인에 의하여 실물로 발행된 "여객 항공권 및 수하물 영수표" 또는 전자항공권(e-Ticket)" 또는 "모바일 항공권 (Mobile Ticket)"을 의미하며, 계약조건, 알림을 포함한다.

1.1.10 전자항공권 (e-Ticket)

항공사에 의해 또는 항공사를 대신해서 발행된 전산 상에만 존재하는 항공권으로 전자항공권 확인증(e-Ticket 확인증) 및 전자 쿠폰을 말한다.

1.1.11 전자항공권 확인증 (e-Ticket 확인증, e-Ticket Itinerary/Receipt)

항공사가 전자 항공권으로 여행하는 여객에게 발행하는 여객 성명, 항공편, 고지 사항을 포함한 문서

1.1.12 전자 쿠폰

여객이 운송될 특정 구간을 명시한 (전자) 탑승용 쿠폰 또는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는 관련 정보

1.1.13 전자 제 비용 청구서 (Electronic Miscellaneous Document: 이하 "EMD")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서 발행되는 증표로서 동 증표에 성명이 기재된 사람에게 여객 항공권의 발행 또는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는 증표.

1.1.14 불가항력

여객이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모든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교통 상황 또는 항공편의 취소 등은 제외)

1.1.15 통상 운임

통상적인 항공 운송을 위해 설정되어 있는 비할인 운임이며, 동 운임을 적용할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된 항공권 유효기간 또는 기타 특별한 조건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1.1.16 특별 운임

통상 운임 이외의 운임

1.1.17 일(日)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포함한 총 일력 일수. 단, 통지를 할 경우에 당해 통지일은 일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유효기간의 산정을 위한 경우에는 항공권 발행일 또는 개시일은 계산치 아니한다.

1.1.18 도중 체류

여행의 중단과 동의어로서 운송인의 사전 합의 하에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지점에서 의도적으로 여객이 여행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1.1.19 목적지

운송 계약에 따른 최종 도착지. 왕복 또는 일주 여행시의 목적지는 출발지와 동일 지점이 된다.

1.1.20 탑승수속 (체크인, Check-In)

항공사에서 여객이 항공편에 탑승하는데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하는 것. 즉, 좌석 배정, 탑승권 제공, 수하물 위탁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1.1.21 탑승수속 마감시간

여객이 탑승 수속과 탑승권 수령을 완료하여야 하는 항공사에 의해 정해진 시간

1.1.22 탑승권 (보딩패스, Boarding Pass)

여객이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증표, 탑승구에서 탑승권을 제시해야 항공편을 탑승할 수 있다.

1.1.23 수하물

여객이 자신의 여행과 관련하여 착용, 또는 사용하거나 안락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용품 및 기타 휴대품을 의미,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위탁 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을 포함

1.1.24 위탁수하물

여객이 유효한 항공권과 함께 제출한 물품에 대해 회사가 접수하고 수하물표와 수하물 영수표를 발행한 수하물

1.1.25 휴대수하물

위탁 수하물 이외의 수하물

1.1.25 수하물표

위탁 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증표

1.1.26 수하물 영수표

여객의 위탁 수하물의 식별과 운송을 위하여 발행된 증표

1.1.27 소아

할인 목적을 위한 만 2세 이상 만 12세 미만 여객

1.1.28 유아

할인 목적을 위한 만 2세 미만 여객

1.1.29 여객의 기내동반 반려동물

개, 고양이, 애완용 새를 말한다.

1.1.30 왕복 여행

왕편 또는 복편 운임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한 지점으로부터 타 지점으로 여행하고 왕편과 동일한 항공로를 통하여 출발 지점에 복귀하는 여행, 또는 한 지점으로부터 타 지점에 여행하되 왕편과 상이한 항공로로 출발 지점에 복귀하되 왕편 및 복편에 동일한 운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여행

1.1.31 일주 여행

한 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계속적으로 일주하는 항공로를 이용하여 동 출발 지점에 돌아오는 여행

1.1.32 오픈-조 (Open-Jaw, 비항공 운송 구간이 포함된 여정)

근본적으로 왕복 여행의 성격을 가졌지만, 한 국가내의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상이하거나 타국내의 도착 지점과 출발 지점이 상이한 여행 또는 4개 지점이 모두 상이한 경우의 여행

1.1.33 손해

운송이나 그에 부수하여 운송인이 행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손해도 포함된다.

1.1.34 프랑스 골드 프랑

순도 1,000분의 900의 금65.5밀리그램에 해당되는 프랑스 프랑.

1.1.35 SDR (Special Drawing Right)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정한 특별인출권

제 2 장 약관의 적용

2.1 총 칙

이 운송 약관과 기타 적용 Tariff의 어떠한 규정도 협약의 규정을 수정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2.2 적 용

본 운송 약관은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또한 전적으로 플라이강원(이하 "회사")의 국내운송약관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 약관과 관련하여 공시된 운임, 요율 및 요금으로 회사에 의하여 수행되는 여객과 수하물의 운송 및 이에 부수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2.3 무상 운송

여객이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무료 운송에 관하여 플라이강원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권리를 보유한다. 단, 그러한 적용의 배제는 법령, 정부 규정, 명령(협약 포함)을 위배할 수는 없다.

2.4 전세 운송 계약

플라이강원(이하 "회사")과의 전세운송계약에 의거 행하는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대하여는 당해 전세운송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전세운송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운송 약관을 적용한다. 여객은 전세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을 수락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의 전세운송계약 당사자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전세 운송계약 및 본 운송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5 효 력

모든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은 항공권 최초 (전자)탑승용 쿠폰에 의하여 행하여진 여행 개시 당일에 유효한 운송 약관과 기타 적용 Tariff에 의거한다.

2.6 예고 없는 변경

적용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및 지시, 서비스 개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운송 약관과 기타 적용 Tariff는 사전에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다. 그 외의 사유로 위 운송 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행 전 발권한 여객에게는 변경된 운송 약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3 장 항공권

3.1 총 칙

여객이 적용 운임을 지불하지 않거나, 플라이강원의 신용거래 조건에 따르지 않는 한, 플라이강원은 항공권을 발행치 아니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운송을 행하지 아니한다.

3.2 항공권의 유효성 및 유효기간

- 가.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경로를 거쳐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송과 적용 등급에 대한 운송을 위하여 효력을 가지며 하기 "나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리고 "다항"의 조건을 준수 시에 유효하다. 각 (전자)탑승용 쿠폰은 좌석 예약이 된 항공편에 유효하며 좌석 예약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좌석 예약신청 시 잔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약될 수 있다. 발행 장소 및 발행일은 항공권 상에 표시 된다.
- 나. 통상 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송 개시일로부터 1년, 또는 일부도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공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상기 유효기간 미만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운임에 따라 발행된 항공권 또는 그러한 운임을 포함하는 항공권의 경우 당해 단기 유효기간은 당해 운임이 적용되는 운송에 한하여 적용된다.
- 다. (전자) 탑승용 쿠폰상의 예약 등급(Booking Class)과 해당 승객의 예약기록(Passenger Name Record: PNR)상의 예약 등급은 일치하여야 한다. 상기 예약 등급이 상이한 경우, 해당 승객의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정해진 차액을 징수 시에 한해 탑승이 허용될 수 있다.
- 라. EMD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이다. EMD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시하지 아니하면 항공권과 교환될 수 없다.
- 마. 항공권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의 24시에 실효한다. 적용 Tariff 규정에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아니하는 한, 항공권 최종 구간의 여행은 유효기간 만료일의 24시 이전에 개시되어야 하며 이 경우는 만료일을 경과하여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
- 바. 유효기간이 만료된 항공권, 또는 EMD는 제13장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된다.

3.3 항공권의 유효기간 연장

가. 상기 제3장 3.2절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임의 추징없이 다음과 같이 연장될 수 있다.

- 1) 아래의 경우 당해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30일까지
 - 가) 플라이강원(이하 "회사")이 당해 유효기간 중에 여객의 좌석이 확보되어 있는 항공편을 취소 또는 지연한 경우
 - 나) 회사가 여객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로서 지정된 지점에 기항치 아니한 경우
 - 다) 회사가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한 경우
 - 라) 회사 사정에 의하여 여객이 타 항공편에 연결되지 못한 경우
 - 마) 회사가 객실 등급을 변경한 경우
 - 바) 회사가 사전에 확보한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2) 유효기간이 1년인 항공권을 소지한 여객이 예약을 요청할 시 좌석 예약이 불가능할 경우, 당해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7일까지

나. 질병으로 인한 여행 중단.

해당 운임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여객이 여행 개시 이후 임신을 제외한 발병으로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에 여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플라이강원은 건강 진단서에 따라 여행이 가능하게 되는 날까지 또는 그러한 날로부터 운임이 지불된 등급에 탑승이 가능하며, 여행이 재개되는 지점 또는 최종 연결 지점을 출발하는 첫 항공편까지 유효 기간을 연장한다. 단, 유효기간이 1년인 항공권의 잔여 (전자)탑승용 쿠폰이 1개 지점 이상의 도중 체류 지를 포함할 경우에, 당해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당해 건강 진단서 상에 표시된 여행 가능 일자로부터 3개월간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플라이강원은 환자를 실제로 동반하는 자의 항공권 유효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한다.

다. 여객이 여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 당해 여객의 동반 직계가족 또는 기타 동반자의 항공권 유효기간은 사망일로부터 45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라. 최단 체류 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특별 운임으로 판매된 항공권의 경우

- 1) 여행 중 사망한 여객의 직계가족에 대한, 또는
- 2) 여행 중 사망한 여객의 기타 실제 동반자에 대한 최단 체류 조건은 당해 사망 증명서 또는 동 사본의 제출시 유보된다.

마. 최단 체류 요건의 적용을 받는 특별 운임 항공권 소지 여객이 자신이 동반하지 않은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최단 체류 기간 만료일 이전에 복편 여행을 개시하고자 하나 당해 사망 증명서 또는 동 사본을 즉각 제시하지 못할 경우, 당해 여객은 자신의 여행 중에 당해 가족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사망 증명서를 추후 제출할 시 최

- 단 체류 기간 만료일 이전에 여행을 하기 위하여 지불한 추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 바. 최단 체류 요건이 적용되는 특별 운임으로 판매된 항공권의 경우, 여행 도중 발생한 진단서에 의해 증명되는 질병으로 인하여 최단 체류 기간 이전에 복편 여행을 개시하고자 할 시, 당해 최단 체류 요건은 유보된다. 당해 여객은 지불된 특별 운임으로 복편 여행을 할 수 있다. "Early Return Account Illness of (여객성명)" 이라고 항공권 상에 표기되어야 한다. 동 진단서 사본은 최소한 2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Note) 당해 여객을 동반하는 직계 가족에게도 동일 규정이 적용된다.*
- 사. 상기 다항으로부터 바항까지 에서 말하는 직계가족이란 여객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손자녀, 외손자녀, 사위, 며느리, 시누이/올케/형수/제수/처형/처제, 형부/매형/매부/처남/시숙/시동생으로 한정한다.

3.4 탑승용 쿠폰의 사용 순서 및 사용

- 가. 구입한 항공권은 항공권 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출발지에서 합의된 도중 체류지, 목적지까지의 운송에 한해 유효하다. 여객이 지불한 운임은 적용 Tariff를 근거로 하며 항공권 상에 명시된 운송을 위한 것이다. 동 사항은 여객과의 계약상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항공권 상에 명시된 순서대로 (전자)탑승용 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항공권은 운송을 위해 접수될 수 없으며, 환불 또는 무효 처리된다.
- 나. 여객이 여정의 변경을 원할 경우 반드시 플라이강원(이하 "회사")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여객은 새로운 여정을 위해 다시 계산된 운임을 지불하거나 또는 원래 여정에 따라 여행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여정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회사가 발행한 항공권에 한해 회사는 운임의 재계산없이 중간 기착지 또는 최종 목적지까지 여객을 운송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자)탑승용 쿠폰을 순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운송이전 미사용 쿠폰은 환불 또는 무효 처리된다.
- 다. 플라이강원과의 합의없이 여정을 변경하는 경우 여행의 실제 여행에 적용된 운임을 부과한다. 여객은 이미 지불한 운임과 변경된 여정에 적용되는 전체 운임의 차액을 플라이강원에 지불하여야 한다. 새롭게 적용되는 운임이 낮을 경우 플라이강원은 차액을 환불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여객의 미사용 쿠폰은 가치가 없다.
- 라. 변경의 종류에 대해서 운임의 변경이 필요치 않는 경우도 있지만, 출발지를 변경하거나 (예를 들어 첫번째 구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여정의 방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불 금액은 인상될 수 있다. 대부분의 운임은 항공권 상에 지정된 날짜와 항

공편에 대해서 유효하며 변경이 불가하거나, 추가 요금 지불 조건하에 변경이 가능하다.

- 마. 전자 항공권의 경우를 제외하고, 탑승용 쿠폰은 여객용 쿠폰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여객이 여객용 쿠폰, 탑승용 쿠폰 및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이 포함된, 항공사의 규정에 맞게 발행된 유효한 항공권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플라이강원은 운송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전자 항공권인 경우에는 여객은 유효한 신분증과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발행되고 항공사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는 유효한 항공권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플라이강원은 운송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3.5 항공권의 불지참, 분실 또는 이례(異例)

플라이강원은 유효한 항공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한다. 전자 항공권의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 또는 동 권의 유효한 탑승용 쿠폰의 분실 또는 불제시의 경우, 여행 당일의 유효한 운임으로 별도의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는 한 당해 항공권 또는 동권의 탑승용 쿠폰상의 구간에 대한 운송은 제공되지 아니한다. 항공권의 일부분이 손상된 경우, 운송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변조되었거나 삭제된 항공권의 경우 또는 여객용 쿠폰 및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과 함께 제시하지 아니하는 항공권의 경우에는 플라이강원은 그러한 항공권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분실 사실에 대해 만족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고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플라이강원은 여객 요청에 따라 新항공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 당해 대체 항공권의 발행에 따라 플라이강원이 입을지도 모르는 여하한 손해에 대해서도 플라이강원이 정한 형식에 의거, 여객이 플라이강원을 면책할 것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新항공권을 발행한다.

3.6 非 양도성

- 가. 항공권은 명의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나.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환불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이외의 자에 의해 항공권이 제시된 경우, 플라이강원이 그러한 항공권에 의해 운송을 제공했거나 환불한 것에 대해서,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는 당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플라이강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항공권이 피 발행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피 발행자의 인지 또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플라이강원은 이러한 부당 사용으로부터 기인하는 부당 사용자의 사망, 상해 또는 그의 수하물 또는 기타 휴대품의 분실, 파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4 장 도중 체류

4.1 도중 체류의 허용

- 가. 운송인의 Tariff나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에 도중 체류는 여하한 착륙 예정지에서도 허용된다.
- 나. 특별 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 소지 여객에 대한 도중 체류는 플라이강원 Tariff에 규정된 제한, 금지 또는 추가 도중 체류 요금 사항에 따른다.

4.2 도중 체류의 사전 조치

도중 체류는 운송인과 사전에 합의하여 항공권 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 5 장 운임, 요금 및 경로

5.1 적용 운임 및 요금

- 가. 본 운송약관 및 적용 Tariff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약관 및 기타 적용 Tariff에 의거한 운송에 적용할 운임 및 요금은 플라이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시되고 항공권상에 명시된 날짜 및 경로에 따른 여행을 위한 운임이 지급된 당일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수수한 운임 및 요금이 상기 적용 운임 또는 요금과 상이할 경우 그 차액을 추징 또는 환불한다.
- 나. 적용 운임은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항공 운송에만 적용되며 공항 지역 내 또는 공항간 이동이나, 공항으로부터 시내까지의 지상 운송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플라이강원에서 별도 요금을 추징할 수 있다. 단, 적용 Tariff에 당해 지상 운송을 요금의 추징없이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다. 여객 요청에 따른 여정 변경 시, 여정 변경일에 유효한 운임 또는 요금에 따라 여객의 운임 또는 요금을 재계산한다.
- 라. 적용 Tariff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Tariff에 공시된 직행 운임은 동일 지점간의 동일 등급에 적용되는 구간 운임을 합산한 운임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마. 적용 Tariff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Tariff에 공시된 운임은 동 운임이 적용되는 등급의 좌석 1개를 여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사전에 2개의 좌석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적용 운임의 2배액을 징수한다.

5.2 미 공시 운임의 산출

어느 2개 지점 간에 운임이 공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 Tariff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을 구성, 산출한다.

5.3 경로

적용 Tariff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운임은 양방향에 적용되며 운임과 관련하여 공시된 경로에 한하여 적용된다. 동일 운임으로 여행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경로가 있을 경우 항공권 발행 전에 여객이 경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당해 항공권에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는 희망하는 경로를 지정할 수가 있다. 경로가 특별히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플라이강원이 그 경로를 결정할 수가 있다.

5.4 세금, 이용료 및 요금 등

정부 당국 또는 공항 운영자에 의하여 부과되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은 공시 운임 및 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플라이강원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서비스 수수료 또는 이용료, 기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 등 기타 요금도 또한 같다. 항공권 발행 후 새로운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여객은 이를 지불하여야 한다.

5.5 지불 통화 및 적용 환율

5.5.1 지불 통화

운임 및 요금의 지불은 외환 관계법 및 정부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플라이강원이 수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임 및 요금이 공시된 통화 이외의 타 통화 수단으로 할 수 있다.

5.5.2 적용 환율

적용 Tariff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공시운임 또는 요금을 판매 통화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환율을 사용한다.

제 6 장 경로 변경, 운송 불이행 및 연결 불능

6.1 여객 요청에 따른 변경

- 가. 플라이강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에 따라 미사용 항공권, (전자)탑승용 쿠폰 또는 EMD에 기재된 경로(출발지 제외), 운송인, 객실 등급, 목적지, 운임 또는 유효기간 등의 변경을 새로운 항공권을 발행함으로써 행한다.
- 1) 플라이강원이 당해 항공권, 또는 EMD를 최초로 발행한 경우
 - 2) 플라이강원이 당해 변경을 행할 권리를 가진 운송인으로서 문서 또는 전산상으로 그러한 변경을 승인 받은 경우
- 나. 경로 변경의 결과로 적용 운임 및 요금이 변경될 경우, 당해 신 운임 및 요금은 적용 Tariff에 정한 바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 다. 경로 변경에 의해서 발행된 신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최초 항공권 또는 EMD에 적용되던 유효기간이 계속 적용된다.

6.2 회사 사정에 의한 경로 변경

- 가. 플라이강원이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항공편을 운항하지 못하거나, 여객의 항공권상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지 또는 체류 지에 기착하지 못하거나, 사전에 예약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9장 9.1절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운송을 거절당한 경우 플라이강원은 하기 조치 중 하나를 취한다.
- 1) 좌석 제공이 가능한 플라이강원의 타 항공편으로 운송하거나,
 - 2) 경로 변경을 위하여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관한 운송을 타 항공사 또는 타 운송 기관에 위탁하거나,
 - 3) 여객을 경로 변경하여 항공권 또는 유효한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 또는 최종 체류지까지 플라이강원의 운송 수단 또는 타 운송기관에 의하여 운송하거나,
 - 4) 제13장 13.3절에 정한 바에 따라 환불한다.
- 나.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인이 운항 시간표대로 운항하지 못했거나 또는 당해 항공편의 운항 시간을 변경했기 때문에 여객이 좌석 예약이 되어 있는 플라이강원의 연결 항공편에 탑승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동 여객을 운송한 운송인이 여객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플라이강원은 당해 연결 불능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플라이강원의 사정에 의하여 경로 변경을 한 여객에게는 당해 여객이 당초 운임을 지불한 등급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그대로 적용한다.

제 7 장 예약

7.1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전자)탑승용 쿠폰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 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EMD, 항공권 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 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7.2 예약의 조건

- 가. 특정 항공편에 대한 좌석의 예약은 플라이강원에 의해 확인되어, 확약된 예약 기록이 플라이강원의 예약 시스템 내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에 유효하다. 여객이 플라이강원이 정하는 시간까지 예약된 좌석에 대한 항공권을 구입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플라이강원은 사전 통고 없이 당해 예약을 취소한다.
- 나. 사전 배정 좌석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플라이강원은 항공기 내 특정좌석의 배정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7.3 예약의 재확인

- 가. 계속 여행 구간 또는 왕복 구간의 예약은 정해진 시간 내에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플라이강원은 예약 재확인이 필요할 경우 재확인 시한과 방법, 장소를 여객에게 통보한다. 여객이 예약 재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계속편 또는 왕복편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플라이강원은 여객이 계속 여행을 원하고 항공편에 좌석이 있는 경우 당해 예약을 재사용하여 운송하고, 항공편에 좌석이 있는 경우 당해 예약을 재사용하여 운송하고, 항공편에 좌석이 없을 경우 여객의 다음 또는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나. 타 운송인에 의한 운송이 포함될 경우 그 구간의 예약 재확인 필요 여부는 여객이 직접 타 운송인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예약 재확인이 필요할 경우 여객은 항공권상에 해당 항공편의 운송인으로 지정된 항공사에 예약 재확인을 하여야 한다.

7.4 통신비

예약에 관한 여객의 특별 요청에 따라 플라이강원이 지불했거나, 청구 받은 전화, 전보, 무선 전신 등의 통신비는 당해 여객이 부담한다.

7.5 예약의 취소

- 가. 예약 확약된 항공편에 대하여 사전 통보없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 플라이강원은 여객의 왕복편 또는 계속편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여객이 사전 통보를 하는 경우 회사는 계속되는 예약을 취소하지 않는다.
- 나. 여객이 동일한 예약 기록 내 둘 혹은 그 이상의 확정된 예약을 하여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플라이강원은 여객이나 여객의 대리인에게 사전 고지없이 여객의 예약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1) 탑승구간 및 탑승일자가 동일한 경우
 - 2) 탑승구간이 동일하고, 해당되는 각각의 탑승 일자가 가장 빠른 탑승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당해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모두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상기 1) 및 2)의 경우 외에, 당해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모두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6 확약의 사전 취소 및 예약부도 위약금

- 가. 본인 사정으로 인해 확약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하려는 여객은 당해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각 이전에 플라이강원의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 확약 취소를 통고하여야 한다.
- 나. 당해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각 이전에 상기 가항의 취소 통고를 행하지 아니하고 확약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할 경우, 플라이강원이 별도로 규정한 예약부도위약금을 징수한다.

7.7 개인정보

여객이나 여객의 대리인은 항공편 예약이나 기타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여객의 개인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용카드 번호 등)를 플라이강원(이하“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회사에 제공된 여객의 개인정보는 여객이 요청한 항공편 예약, 기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회사의 지점/대리점, 타 항공사, 제휴사, 서비스 제공사로 제공될 수 있으며,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에 의해 요청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제공될 수 있다.

제 8 장 탑승 수속과 탑승

8.1 탑승 수속과 마감시간

여객은 항공기 출발 전 출국 수속과 탑승 수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전에 폴라이강원이 지정한 시간까지 좌석 배정 및 수하물 수속을 마쳐야 한다. 폴라이강원은 정해진 시간 내에 제반 수속을 완료할 수 없을 정도로 늦게 도착한 여객을 위하여 출발 시각을 지연시킬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예약을 취소할 권리를保有한다.

8.2 탑승 마감시간

- 가. 여객은 폴라이강원이 좌석 배정 시 지정한 시간까지 탑승구에 도착하여야 한다.
- 나. 폴라이강원은 여객이 정해진 시간까지 탑승구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지정된 좌석을 취소할 수 있다.

8.3 책임

폴라이강원은 동 조항의 규정 미 준수에 따라 발생한 여객의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9 장 운송의 거절, 제한 등

9.1 운송 거절 권리

가. 플라이강원은 특정 여객에게 운송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그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여객에게 통고한 이후에는 당해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나. 플라이강원(이하 "회사")은 아래의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하거나 도중 지점에서 하기 조치할 수 있다.

- 1) 여객의 인명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한 정부기관 또는 회사의 지시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 2) 정부의 적용 법률, 규정 또는 명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이 타 여객이나 승무원의 안전,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안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4) 여객이 탑승권 발급 등 탑승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 공격적인 행동, 욕설 또는 모욕을 주는 행위, 소란 행위 등을 한 경우
- 5) 주류, 약물로 인한 손상을 포함하여, 여객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여객 자신, 타 여객, 승무원 또는 재산에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6)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이 크게 짖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주위 승객의 안락한 여행을 방해하거나 유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7) 여객이 이전(以前)의 어느 항공편 탑승 중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타 여객에게 불편 또는 불쾌감을 초래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8) 여객이 항공권의 명의인과 동일인 여부 확인 목적으로 회사 또는 그의 지정 대리인이 요구하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본인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9) 여객이 신체 또는 소유물에 대한 보안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 10) 여객이 통과지 국가, 또는 서류가 미비된 국가에 입국 시도 목적으로 여행 서류를 파기, 변경, 위조하거나, 확인증 발급 조건으로 회사가 보관을 위하여 요구하는 여행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11) 여객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회사 또는 그의 임명 대리점 이외의 자를 통하여 구입했거나, 분실, 도난 신고되었거나, 위조된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우

다. 초과 판매 또는 플라이강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항공기 허용 탑재량이 감소한 경우, 회사는 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을 유도할 수 있다. 비 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의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 항공기 운항과 직접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여객, 예약이 확약된 여객의 순으로 탑승 유예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용되는 각국 법률 및 국제 협약에 따라 보상한다. 단,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또는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의 경우는 비 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 라.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던 플라이강원에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공기 허용 탑재량이 부족이하게 감소한 경우, 플라이강원은 변경된 항공기 허용탑재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기할 최소한의 여객 또는 물품을 선정할 수 있다. 단, 이경우 회사는 항공기 운항과 직접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여객, 예약이 확약된 여객의 순으로 탑승 유예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또는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의 경우는 비 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 마. 상기 가항부터 라항까지의 사유로 운송이 거절 되거나, 도중에서 하기되는 여객에 대하여는, 제13장 13.3절에 의거하여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을 행한다.

9.2 조건부 운송 인수

- 가. 플라이강원은, 여객의 상태, 연령 또는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여객 자신에게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러한 상태, 연령, 정신적, 신체적 조건에 기인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그의 악화나 여타 결과(사망을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조건 하에서 적용 Tariff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운송을 행한다.
- 나.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의 경우 플라이강원은 여객이 사전에 통보한 바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다한다. 단, 그러한 도움의 내용은 관련 법령 및 항공기 설비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다. 여객이 장애 사실과 운송에 필요한 특별 요청 사항을 플라이강원에 통보하여 운송이 합의된 이후에는, 그러한 장애 사실과 특별 요청 사항을 이유로 운송이 거절되지 않는다.

9.3 기내에서의 행위

가. 플라이강원은, 여객이 항공기 내에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신체의 억류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해 여객은 운항 중 어느 지점에서 하기 조치되거나 계속 여행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항공기 내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될 수 있다.

- 1) 항공기, 탑승 인원 또는 탑재된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 2) 기내에서의 제반 행위(흡연, 음주, 약물복용, 소란행위를 포함하되, 이에만 국한되지 아니함)에 대한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3) 타 여객 또는 승무원의 불안, 불편, 손해 또는 부상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상기 가항에 언급한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해 여객이 책임을 부담한다.

9.4 전자기기

플라이강원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기기(휴대 전화기, 텔레비전, 컴퓨터, 녹음기, 라디오, CD플레이어, 전자 게임기, 전자 조종 장난감, 송수신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 10 장 수하물

10.1 총 칙

- 가. 수하물의 운송은 항공편의 (전자)탑승용 쿠폰에 의하여 행하여진 여행 당일에 유효한 운송 약관과 기타 적용 Tariff에 의거한다.
- 나. 여객은 수하물 중에 항공기,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항공 운송 도중 파손되기 쉬운 것, 부적절하게 포장된 것 또는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금지된 물품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플라이강원의 판단으로 수하물의 중량, 크기 또는 성질이 항공기에 의한 운송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플라이강원은 출발 전 또는 운송 중 당해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 다. 여객이 플라이강원이 정한 적용 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플라이강원에 의해 설정된 신용거래 조건에 따르지 않는 한, 수하물 운송을 행하지 아니한다.

10.2 위탁수하물의 운송

- 가. 여객은 플라이강원이 수하물 위탁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하여 수하물 위탁을 요청할 수 없으며,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나. 플라이강원이 위탁 수하물을 인도받은 경우, 전산상에 위탁 수하물 개수 및 중량을 반영한다. 또한 플라이강원은 각각의 수하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수하물표를 발행하며, 수하물 영수표를 여객에게 인도한다.
- 다. 모든 위탁 수하물을 통상 취급 방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여행용 가방 또는 그와 유사한 용기에 적절히 포장되어야 한다.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캠코더, 카메라, MP3 플레이어 등 전자제품 및 파손되기 쉬운 물건, 부패성 물품, 화폐, 보석류, 귀금속, 유가증권, 증권, 기타 귀중품, 견본 또는 서류는 위탁 수하물 내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위탁 수하물로서 운송을 접수하지도 아니한다.
- 라. 위탁 수하물은 가능한 한 여객과 동일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과 보안상의 사유 또는 기타 탑재량 관계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플라이강원은 해당 항공편과 가장 근접한 시간의 탑재가 가능한 항공편으로 운송한다.
- 마. 여객이 수하물을 위탁한 시점이 플라이강원이 정한 시간 이후인 경우, 플라이강원은 해당 수하물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 바. 플라이강원은 항공편상에 성명이 기재된 여객의 수하물만을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객 본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대리운송을 부탁 받은 물품에 대하여 탑재 및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플라이강원은 수하물 대리운송을 부탁한 자 및 실제 탑승자에게 이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0.3 무료 위탁 수하물의 허용량

- 가. 성인, 소아 및 소아 운임을 지불한 유아의 위탁수하물은 15킬로그램까지 무료로 한다.
- 나. 성인 적용 운임의 75% 이상을 지불한 소아 또는 유아의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성인 적용 운임을 지불한 여객과 동일하며 이와 별도로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1개와 유아 운반용 요람 또는 유·소아용 카시트 중 1개가 추가로 허용되나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않는 경우, 기내 반입 사이즈에 한해 기내로 휴대할 수 있다.
- 다.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운임 지불 여객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무게가 10킬로그램(22파운드) 이하이며 이와 별도로 완전히 접수 있는 유모차 1개와 유아 운반용 요람 또는 유아용 카시트 중 1개가 추가로 허용되나 위탁 수하물로 부치지 않는 경우, 기내 반입 사이즈에 한해 기내로 휴대할 수 있다.
- 라. 거동이 불편한 여객이 사용하는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 기구는, 상기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무료로 운송될 수 있다.
- 마. 무료 위탁 수하물의 허용량은 여객이 지불한 운임의 구간 및 품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보안 및 안전 등의 사유로 크기와 무게, 품목이 제한될 수 있다.

10.4 초과 수하물 요금

- 가. 여객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플라이강원의 유효한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하여 별도의 요금을 부과한다.
- 나. 무료 수하물 허용량 범위 내에 있는 수하물에 대해서도 해당 수하물의 수량, 크기, 무게가 항공사 규정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초과 수하물 총 중량 산정 시 1킬로그램 미만의 중량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다. 스포츠 장비 등과 같은 특수 수하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금이 부과된다.
- 라. 여객은 초과 수하물 요금에 대하여, 출발지에서 도중 체류지, 목적지에 이르는 전 여정에 대하여 지불하거나(해당 수하물이 목적지까지 위탁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 출발지로부터 도중 체류지 또는 목적지까지 각각 지불하는 것 중에 선택하여 지불할 수 있다. 초과 수하물 요금을 도중 체류지까지 지불한 경우에는 여행이 재개될 때 해당 도중 체류지에서 다음 도중 체류지 또는 목적지까지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목적지까지 초과 수하물 요금을 기 지불하고 초과 수하물표가 발행되었

으나 여행 도중 수하물량이 추가로 증가한 경우, 플라이강원은 해당 증가분에 대하여 여객의 선택에 따라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까지 해당 증가분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고 별도의 초과 수하물표를 발행한다.

마. 초과 수하물 요금의 환불

- 1) 여객이 탑승수속 마감시간 전까지 초과 수하물의 운송을 취소하거나 좌석을 예약한 항공편을 미탑승한 경우에는 여객이 지불한 초과 수하물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단, 사전 수하물을 구매한 경우 별도 규정을 따른다.
- 2) 여객이 탑승수속 마감시간을 경과하여 수하물 운송을 취소하거나, 도중 지점에서 수하물 인도를 요구할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은 환불되지 아니한다. 단, 여객 사정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여객과의 운송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5 위탁 수하물의 인도

- 가. 여객은 최종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에 도착 시 위탁 수하물을 수취하여야 한다.
- 나. 플라이강원은 수하물 영수표를 소지한 사람을 정당한 권리자로 간주하고 수하물을 인도한다. 이때 플라이강원은 수하물 영수표의 소지자가 정당한 권리자 인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직접 또는 간접 손해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기 "라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위탁 수하물은 수하물 영수표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 다. 상기 "나항"에서 정하는 바에 부합되지 않는 자가 수하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여객이 본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플라이강원의 요청에 따라 추후 해당 수하물의 인도로써 초래될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하여 플라이강원을 면책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 수하물을 인도한다.
- 라. 수하물 영수표의 소지자가 출발지 또는 도중 체류지에서 수하물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상기 "나항"에 정하는 바와 동일한 조건으로 정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제반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수하물 운송을 위하여 기 지불한 요금의 환불 책임없이 해당 여객에게 인도할 수 있다.
- 마. 수하물 영수표 소지인이 수하물 인도 시 서면에 의한 이의 제기없이 수하물을 인수한 경우, 해당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10.6 기내 휴대수하물

- 가.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기내 선반이나 여객 좌석 밑에 수용되고 삼면 총합이 115센티미터(45인치) 이하로서 여객이 기내에 휴대하여 전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 무료로 운송될 수 있다.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운임 지불 여객은 본 조항 및 아래 "나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나. 상기 "가항"의 수하물 외에, 다음의 품목 중 1개에 한하여 추가로 기내 반입이 허용될 수 있다.
- 1) 핸드백, 지갑 또는 소형 서류가방 1개
 - 2) 소량의 독서물
 - 3) 외투, 덮개 또는 모포
 - 4) 비행 중 사용하는 유아용 음식물
 - 5) 신체장애 여객이 사용하는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휠체어, 목발 또는 의수, 의족 등의 보조기구
 - 6) 소형카메라 및 쌍안경
 - 7) 끝이 뾰족하지 않은 우산 또는 지팡이
 - 8) 노트북 컴퓨터 및 보관용 가방
- 다. 기내 휴대 수하물은 운항 항공기의 기내 탑재 공간의 제약과 출·도착 국가의 규정 및 공항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라. 항공기의 화물칸에 탑재가 부적합한 약기류 또는 귀중품 등의 경우는 기내 좌석 점유 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 기내 좌석 점유 수하물은 예약 시에 운송 신청 및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1개 좌석당 수하물의 최대 중량이 75킬로그램(165파운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수하물의 중량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나 초과 수하물 요금을 결정하는 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운송되는 구간에 여객이 좌석을 점유한 경우 지불하는 운임과 동일한 요금이 적용된다. 단, 포괄 여행 운임, 소아 운임, 또는 선원 운임, 기타 적용 Tariff에 의한 할인 운임은 적용 요금으로 사용될 수 없다.
- 마. 기타 플라이강원에서 항공기 안전을 목적으로 정한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기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10.7 수하물의 검색

플라이강원은 여객 입회 하에 여객의 수하물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주 수하물, 여객이 소지하지 않은 수하물 또는 전기 "10.6절 나항"에 해당되는 수하물의 경우에는 여객 입회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수하물을 개봉하여 조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수하물을 확인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권리의 보유 또는 행사가 본 운송 약관 및 제 규정에 의하여 운송이 거절될 내용물을 플라이강원이 운송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합의로 해석되거나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10.8 증가 요금

플라이강원은 증가요금을 적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증가요금 신고를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운송이 거절될 수 있다.

10.9 반려동물의 운송

가. 플라이강원은 생동물의 위탁수하물과 기내 휴대수하물로의 운송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나. 단, 장애인 보조건은 여객의 무료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다음 조건에 의하여 무료로 운송한다.

- 1) 여객이 동반하되, 별도의 좌석을 차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타 여객에게 불편감을 주거나 비행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3) 운송 도중 당해 동물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 등의 경우에 당해 손해가 항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항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4) 출·도착 및 경유지 국가 검역과 세관을 비롯한 출입국 절차 수속은 여객의 책임이며, 동 과정에서 발생한 여객 또는 플라이강원에 부과된 벌금이나 비용 일체는 여객이 지불하여야 한다.

제 11 장 항공편의 스케줄, 지연 및 취소

11.1 스케줄

가.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운송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스케줄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플라이강원은 항공편 연결에 대하여도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플라이강원은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표시상의 오기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 발착 일시 또는 항공편 운항에 관한 플라이강원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여하한 진술 또는 표시도 플라이강원을 구속할 권한을 가지 아니한다.

나. 예약 시 플라이강원은 여객에게 예약 시점에 유효한 예정된 운항시간을 통보하고, 항공권 발권 시 항공권 상에 명시한다. 항공권이 발행된 후에도 예정된 운항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플라이강원은 여객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락처로 그러한 변경사항을 통고한다. 이 경우 잘못된 연락처의 제공, 연락처 변경 후 미 고지 등 여객의 귀책사유에 따른 통보의 미 도달로 인한 여객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플라이강원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항공권을 구입한 이후에 운항시간이 변경되었으나 여객이 수용하지 않고, 플라이강원이 여객의 수용 가능한 대체 편을 예약하지 못한 경우 제13장 "13.3절"에 따라 환불한다.

11.2 취 소

가. 플라이강원은 예고없이 운송인 또는 항공기를 변경 대체할 수 있다.

나. 플라이강원(이하 "회사")은 아래와 같은 경우 예고없이 항공편, 후속 항공편 또는 예약을 취소, 중지, 변경, 연기 또는 지연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착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본 운송 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회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회사는 관련 약관, 규정, Tariff 및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을 행한다.

- 1) 실제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발생이 보고된 것으로서, 운송인의 통제 능력 하에 있지 않은 사실 (기상조건, 천재지변, 파업, 폭동, 소요, 출입항 금지, 전쟁, 적대 행위, 동란 또는 그러한 사실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인하는 지연, 요구, 조건 사태 또는 지시
- 2) 예측, 예기 또는 예지하지 못한 사실
- 3) 정부의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지시
- 4) 노동력, 연료 혹은 설비의 부족, 플라이강원 또는 타사의 인력상의 난점 등의 경우

다. 여객이 플라이강원(이하 "회사")이 요청한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거절하거나, 또는 여객의 수하물에 대해 요청된 요금의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권 또는 항공권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본 운송 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지불한 운임 및 요금의 미사용 부분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 12 장 환 불

12.1 총 칙

플라이강원에 의한 미사용 항공권 또는 EMD의 환불은 하기 "13.5절"에서 정하는 바 이외에는 아래 조건에 따라 행한다.

- 가. 환불 신청은 당해 항공권 또는 EMD의 유효기간 내에 행해져야 한다. 항공권 또는 EMD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환불이 신청되는 경우에 플라이강원은 동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 나. 환불을 신청하는 자는 전자 항공권을 제외한 항공권의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을 플라이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은 항공권 또는 EMD에 여객으로서 성명이 기재된 자에게 행한다.
 - 1) 항공권 또는 EMD가 하기에 의거 발행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
 - 가) 유니버설 에어 트래블 플랜(Universal Air Travel Plan: 이하 "UATP"라 한다)에 의한 경우에는 에어 트래블 카드(Air Travel Card)에 명기된 자의 구좌에,
 - 나) 정부 운송 청구서(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 2) 구입자가 구입시에 환불 받을 자를 지정한 경우 환불은 당해 지정된 자에게 행한다.
- 라. 환불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상에 기재 또는 지정된 명의인, 회사 또는 대리점임을 표명하는 자에게 본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불은 유효한 환불이며, 플라이강원은 이후 진정한 권리 자에 대하여 또다시 환불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마. 출국 의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정부 기관 또는 플라이강원에 제출된 항공권에 대하여 플라이강원은 당해 여객이 당해 국가 체재 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운송인 또는 기타 교통편에 의하여 출국할 것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12.2 통 화

환불은 항공권 또는 EMD가 최초로 구입된 국가 및 환불이 행하여지는 국가의 법령,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행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환불은 운임 지불 시 사용한 통화, 한국 또는 환불이 행하여 지는 국가의 법정 통화, 또는 항공권 또는 EMD가 구입된 국가의 통화로서 운임이 당초 징수된 통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하되, 한국 내에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 법정 통화인 한화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3 플라이강원 사정에 의한 환불

- 가. 본 항에서 말하는 “플라이강원 사정에 의한 환불”이란 항공편의 취소, 예약된 좌석의 플라이강원에 의한 제공 불능, 항공편의 연기 또는 지연, 예정된 도중 체류지의 생략 또는 제9장 “9.1절”에 정한 조건에 의한 운송 거절로 인하여 여객이 그의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는 운송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환불을 말한다.
- 나. 플라이강원 사정에 의한 환불 시 환불 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1) 항공권의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한 운임의 전액
 - 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의거 산출한다.
 - 가) 운송이 중단된 지점으로부터 항공권에 기재된 목적지나 도중 체류지 또는 운송이 재개된 지점까지의 미사용 구간에 적용되는 편도 운임(왕복 또는 일주 여행 항공권의 경우에는 왕복 운임의 반액) 및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당초 운임 계산에 할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적용된 할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나) 지불한 운임과 운송된 구간의 운임과의 차액

12.4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

- 가. 본 절에서 말하는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이란 13절 “가항”에서 말한 “플라이강원 사정에 의한 환불” 외의 항공권 또는 EMD의 환불을 말한다.
- 나. 일부 또는 전체 환불 불이 조건으로 특별 운임이 적용된 항공권이 판매될 수 있으며, 여객은 자신의 여행 조건에 가장 적합한 운임을 선택하여야 한다. 여객은 당해 항공권을 취소하여야 할 경우를 위한 적절한 대비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 다.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 시 환불 액은 아래와 같다.
- 1) 항공권을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 운임에서 적용 가능한 서비스 수수료 또는 위약금을 공제한 차액.
 - 2) 항공권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불 운임 총액과 항공권이 사용된 구간의 적용 운임 및 요금의 총액과의 차액에서 적용 가능한 서비스 수수료 또는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
- 라. 항공권의 일부를 환불함으로써 당해 항공권이 운송이 금지된 지점간에 사용된 결과가 될 경우의 환불 금액은, 당해 항공권이 플라이강원의 운항 권에 위배되지 않는 결과가 되는 지점까지 사용되었던 것처럼 하여 상기 “다항” 2)에 의거 결정한다.

12.5 분실 항공권

전자항공권의 경우를 제외하고, 분실 항공권 또는 그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은 아래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환불 신청은 환불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내에 행해져야 한다. 환불은 환불되기 전까지 당해 분실 항공권 또는 쿠폰이 타인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환불 또는 재 발행되지 않았어야 이루어지며, 나아가서 당해 환불을 행함으로써 또는 사후에 당해 분실 항공권이 운송, 환불, 기타 사용을 위해서 제시됨으로써 플라이강원이 입게 될지도 모르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이에만 국한되지 않음) 손실, 손상, 손해, 배상 청구 또는 기타 비용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플라이강원을 면책하게 하며, 여객 스스로가 플라이강원에 대하여 배상한다는 조건에 여객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플라이강원의 태만으로 인하여 제3자에 의해 사용, 환불 또는 재 발행된 경우는 제외)
- 나. 환불은 여객이 분실을 증명하는 만족할 만한 증거를 플라이강원에 제시하고 적절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아래 기준 중 해당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 1) 항공권이 일부도 사용되지 않은 경우
 - 가) 여객이 대체 항공권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된 운임 전액을 환불한다.
 - 나) 여객이 분실 항공권과 동일한 등급, 유효기간, 여정, 발행 조건으로 별도의 대체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여객이 당해 항공권 구입을 위하여 지불한 운임을 환불한다.
 - 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 가) 여객이 대체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불된 운임 총액과 항공권이 실제로 사용된 구간에 적용되는 운임 및 요금의 총액과의 차액.
 - 나) 여객이 분실 항공권과 동일한 등급, 유효기간, 여정, 발행 조건으로 별도의 대체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여객이 당해 항공권 구입을 위하여 지불한 운임을 환불한다.
- 다. 플라이강원이 항공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실한 경우 플라이강원이 항공권 재 발행 또는 환불 책임을 진다.

제 13 장 지상 운송 서비스

적용 Tariff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플라이강원은 공항 지역 내, 공항과 공항간 또는 공항과 시내간의 지상 운송수단을 보유, 운행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지상 운송 수단이 플라이강원에 의해 직접 운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운송은 플라이강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아니며 그렇게 간주될 수도 없는 독립된 업체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당해 지상 운송 수단의 수배를 위해 여객을 돕는 과정에서 플라이강원의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행하는 여하한 행위도 당해 독립된 운행 업체의 작위 또는 부 작위에 대해 플라이강원으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플라이강원이 여객을 위하여 당해 지상 운송 수단을 보유하고 운행하는 경우, 여객의 항공권,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 가격에 대한 협약에 표기 또는 언급된 것을 포함하여 플라이강원의 운송 조건, 규정 등은 당해 지상 운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상기의 경우, 여객이 지상 운송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플라이강원은 운임의 일부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 14 장 숙박

14.1 숙박

- 가. 숙박비는 여객 운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나. 직행편의 스케줄에 따른 숙박 또는 여타 체류 시 플라이강원은 그의 재량에 따라 여객의 숙박비를 부담할 수 있다.
- 다. 여객의 요청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여객을 대신하여 숙박 시설에 대한 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당해 예약의 확실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플라이강원 또는 그 대리인이 예약을 위해 수배 또는 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14.2 플라이강원에 의한 알선

여객의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의 알선 행위에 있어서 플라이강원은 이에 요하는 비용이 플라이강원 부담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플라이강원은 여객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함에 불과하다. 여객에 의한 당해 숙박시설의 사용 결과로써, 또는 그와 관련하여 또는 플라이강원 이외의 제삼자(타인, 회사 또는 관계 당국)가 여객에 대하여 사용을 거절함으로써 여객에게 발생하는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플라이강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5 장 출입국 수속

15.1 법령의 준수

여객은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여행 요건 및 플라이강원의 규정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의 취득과 관련하여, 또는 당해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요건 또는 지시의 준수와 관련하여, 플라이강원의 직원이나 대리점이 여객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제공한 조언 또는 안내에 대하여 플라이강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여객이 당해 서류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당해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요건 또는 지시를 준수하지 못해서 여객에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플라이강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5.2 여권 및 사증

- 가. 여객은 관계국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요건에 의거 요구되는 일체의 출입국 서류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플라이강원은 적용 법령,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요건에 따르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한다. 플라이강원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플라이강원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여객은 플라이강원에 대하여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나. 경유지 국가 또는 목적지 국가에서 여객의 입국 불허로 인하여 플라이강원이 정부의 명령에 의거 여객을 그의 출발지 또는 타 지점으로 송환하여야 할 경우, 적용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객은 송환에 관련된 적용 운임을 플라이강원에 지불하여야 한다. 미 탑승 구간의 운송을 위해 여객이 플라이강원에 지불한 금액 또는 플라이강원이 보유하고 있는 여객 소유의 금전을 플라이강원은 당해 운임의 지불에 사용한다. 입국 거절 또는 추방 지점에서의 운송을 위해 징수한 운임은 환불되지 않는다.

15.3 세관 검사

여객은 세관과 기타 정부 관리의 요구에 따라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의 검사에 참관하여야 한다. 플라이강원은 여객이 본 조건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여객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여객이 본 조건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플라이강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여객은 당해 손해를 플라이강원에 배상하여야 한다.

15.4 정부의 규정

플라이강원이 적용 법령, 정부 규정, 요구, 명령 또는 요건에 의거 여객의 운송을 거절하여야 한다고 선의로 타당한 결정을 하여 여객 운송을 거절한 경우 플라이강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6 장 운송인의 책임

16.1 승계(연결) 운송인

1개 항공권 또는 그와 연결하여 발행된 연결 항공권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운송인이 연결하여 행하는 운송은 당일 운송으로 간주한다.

16.2 적용 법규

- 가. 본 약관에 의한 국제 운송은,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인 경우에는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에 의하고, 개정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 또는 협약에 정의된 국제 운송인 경우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인 경우에는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한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나. 상기 "가항"에 정하는 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플라이강원이 행하는 모든 운송 및 기타 서비스는 다음에 따른다.
- 1) 적용 법령 (협약을 시행하는 국내법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국제 운송"이 아닌 운송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을 준용하는 국제법 포함), 정부의 규정, 명령 및 지시
 - 2) 플라이강원의 영업소 및 플라이강원 정기편이 운항되고 있는 공항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는 본 운송 약관 및 적용 Tariff, 기타 제 규정 및 시간표 (단, 동 시간표에 기재되어 있는 출발, 도착 시간 그 자체는 포함되지 않음)
- 다. 운송인의 명칭은 항공권상에 약어로 표기될 수 있으며 운송인의 주소는 항공권상에 운송인의 최초 약어 명칭과 동일한 행에 표시된 출발지 공항이다. "협약"의 목적상 합의된 도중 기착지란, 항공권 및 동 항공권과 연결되어 발행된 연결 항공권에 명시된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외한 지점, 또는 여객의 경로상 계획된 도중 착륙지로서 운송인의 운항 시간표에 표기된 지점이다. 각 운송인의 정식 명칭과 약어 명칭은 적용 Tariff에 표기되어 있다.

16.3 책임 제한 및 구상권의 보유

협약 또는 기타 적용 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플라이강원의 책임은 아래와 같다.

- 가.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플라이강원이 행하는 기타 서비스로부터 또는 그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배상 청구 (이하 본 운송 약관에서는 "손해"라 총칭한다.)에 대하여 플라이강원은 그 손해가 플라이강원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외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나. 플라이강원(이하 "회사")은 회사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한, 여하한 경우에도 휴대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휴대 수하물의 탑재, 하기 또는 환적 시 회사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 다. 플라이강원(이하 "회사")이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회사가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라. 플라이강원(이하 "회사")에 의해 행하여진 운송과 관련하여 제3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회사의 여객 또는 그 가족에 의하여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회사는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 상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개정 바르샤바 협약 제22조 (1)항에 따른 책임 한도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 2) 회사는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 상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28,821 SDR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 제20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위 1) 및 2)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소송상의 청구이거나 소송 이외의 청구 여부를 불문하고 협약에서 정하여진 일체의 권리를 가진다. 또한 회사는 제3자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구상권을 보유한다.
 - 4) 미국지역의 미국 사회보장기관 (U.S Social Agencies)를 제외한 모든 사회보장기관 또는 기타 유사 기관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회사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 제20조 (1)항 및 제22조 (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5) SDR로 표시된 금액을 각국 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일에 유효한 당해 통화와의 환율을,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하여야 할 손해배상 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당해 통화와의 환율을 적용한다.

- 마. 상기 “라항” 1) 및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손해를 야기하여 여객의 사망, 부상 기타 신체 상해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을 대리하여 또는 그 사람에 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플라이강원은 협약 및 기타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바. 여객의 지연에 대한 플라이강원의 책임은 여하한 경우에도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사. 수하물의 지연 혹은 파손, 분실의 경우 플라이강원의 책임 한도는 아래와 같고 배상 시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 1) 아래 2) 이외의 운송의 경우 위탁 수하물은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 프랑 또는 그 상당액(미화 약20달러), 휴대 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1인당 5,000 프랑스 골드 프랑 또는 그 상당액(미화 약 400달러)로 한다. 여객에 대하여 위탁 수하물 전부가 아닌 일부를 인도하는 경우, 또는 위탁 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미인도 부분 또는 손해 부분에 관한 플라이강원의 책임은 그 위탁 수하물의 부분 또는 내용품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중량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산출한다.
 - 2)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에 플라이강원의 책임 한도는 위탁 수하물과 휴대 수하물에 대해 1인당 1,288 SDR로 한다. 개인 소지품을 포함한 휴대 수하물의 경우 운송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과실에 기인하였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
 - 3) 위탁 수하물의 경우 여객이 사전에 상기 책임 한도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적용 Tariff에 의거 증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플라이강원(이하 “회사”)의 책임 한도는 당해 높은 신고 가격으로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회사는 여객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모든 손해 배상 청구 시에는 실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 아. 플라이강원(이하 “회사”)은 여객 자신의 수하물 내용품에 기인한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자기 물품에 의하여 타 여객의 수하물 또는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당해 여객은 이에 따라 회사가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 자. 여객의 위탁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캠코더, 카메라, MP3 플레이어 등 전자제품 및 파손되기 쉬운 물건, 부패성 물건, 화폐, 보석류, 은제품, 유가증권, 기타 귀중품, 서류 또는 견본의 분실,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플라이강원(이하 “회사”)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차. 플라이강원(이하 "회사")은 이 약관의 규정상 수하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위탁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에 인도되어 화가가 접수한 그러한 물품은 수하물 가격 및 책임 한도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회사의 공시 요율 및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 카. 플라이강원(이하 "회사")이 타 운송인의 노선상의 운송을 위하여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수하물을 위탁 받는 경우 회사는 당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만 행위 하는 것이며, 공동운항편은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회사는 회사 노선 이외에서 발생한 여객의 사망, 상해, 지연 또는 휴대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회사 노선 이외에서 발생하는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운송 계약상 최초 운송인 또는 최종 운송인인 경우에 당해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본 약관에 정해진 조항에 따라 여객은 회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타. 본 운송 약관 및 적용 Tariff에 의거하여 행하는 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 손해 또는 특별 손해에 대하여 플라이강원(이하 "회사")이 손해의 발생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파. 본 약관 및 적용 Tariff에 설정된 플라이강원(이하 "회사")의 면책 또는 책임 한도에 관한 제반 규정은 회사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그리고 운송을 위해 회사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그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전원에게 적용된다.

16.4 제소 원인

여객 및 수하물 운송과 관련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든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든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것이든지 그 청구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협약에서 정한 조건과 제한 하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협약은 손해 배상 청구권자가 누구이며 청구권자가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7 장 손해 배상 청구기한 및 제소기한

17.1 손해 배상 청구기한

수하물의 파손 또는 일부 분실의 경우, 여객은 손상을 발견한 즉시 또는 늦어도 수령일 수부터 7일 이내, 수하물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 여객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플라이강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여하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모든 이의는 상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17.2 제소기한

플라이강원(이하 "회사")의 여객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제소는 그 청구 원인에 관계없이 여객이 목적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회사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제 18 장 법령 우선

항공권, 본 운송 약관 또는 기타 적용 Tariff에 정하는 규정이 법령, 정부의 규정, 명령 또는 요건에 위반되는 경우에 본 규정은 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이는 규정이 무효가 되어도 타 조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제 19 장 수정 및 포기

플라이강원의 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대표자는 운송 계약, 본 약관 또는 기타 적용 Tariff 의 여하한 규정도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제 20 장 약관의 정본

국제여객운송약관은 국문판을 정본으로 하여 영문판을 발행한다.